

의안번호	제402호
의결연월일	2021. 10. 18.

-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10. 8. 예산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1. 10. 8.

다. 상 정 일 자 : 2021. 10. 18.

제27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보건소장 : 최 승 목]

가. 제안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군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방접종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예방접종 지원종류) 국가필수예방접종 중 인플루엔자 또는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예방접종 지원대상) 접종일 기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규칙은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제12조(시행규칙)를 삭제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 우 현)

-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국가무료접종사업에서 제외된 14세 부터 64세의 군민을 대상으로 군비로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군수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 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인플루엔자 등 16종의 감염병을 군수가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제64조에서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경비의 군비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부합하므로,
-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인플루엔자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4. 질의·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